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642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2026년 4월 15일

다. 회부일자: 2026년 4월 15일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안

-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7조 9,053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조 8,985억 2천 1백만원에서 68억 7천 8백만원(0.1%)을 증액 편성.
-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세입 증액 편성분임.

< 2026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예산	2026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292,631	7,905,399	7,898,521	6,878	0.1%
일반회계	5,279,836	5,587,033	5,587,033	6,878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0,636	145,672	145,672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2,160	2,165,817	2,165,817	-	-

나. 세출예산안

-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조 2,580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조 2,311억 9천 6백만원 대비 268억 7천 2백만원(0.2%)을 증액 편성

< 2026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예산	2026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1,413,574	12,258,067	12,231,196	26,872	(0.2)
행정운영경비	813	790	790	-	-
재무활동	1,032,063	1,146,095	1,146,095	-	-
사업비	10,380,697	11,111,182	11,084,310	26,872	(0.2)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전액 증액 사업임.

- 민생안정지원에 따른 시비사업은 142억 5천 4백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56억원

- 장애인버스요금 지원 사업 56억원
- 돌봄SOS사업 19억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11억원

○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비사업은 126억 1천 9백만원임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3억원
- 긴급복지지원 사업 31억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73억원 등 총 7개 사업

다. 세부사업별 추경내역

〈표〉 복지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269,125	26,872	295,997	
복지정책과 (3건)		27,423	6,349	33,772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1,848	5,557	27,405	'26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신청자 지속 증가에 따른 지원 가구 증가 ('26년 본예산) 5,021가구 → ('26년 추경예산) 5,322가구
2	일상돌봄서비스	1,298	324	1,622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
3	기부식품제공사업	4,276	468	4,744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운영 확대 등에 따른 증액
장애인복지과 (1건)		39,951	5,645	45,596	
4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9,951	5,645	45,59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예상 부족분 편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장애인자립지원과 (2건)		50,918	7,722	58,640	
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4,470	7,277	41,747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 반영
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6,448	445	16,893	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 반영
어르신복지과 (1건)		-	96	96	
7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돌봄 보조 인력지원	-	96	96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청년인턴 배치'에 따른 매칭 예산 반영
고독대응과 (1건)		51,955	934	52,889	
8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51,955	934	52,889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노인정책과-649 4호, 2025.12.15.) 반영
돌봄복지과 (3건)		98,878	6,127	105,005	
9	돌봄SOS 사업 운영	36,088	1,912	38,000	통합돌봄대상자 중 긴급지원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재가 서비스에 한해 연 60만원 추가 지원 시범 추진 * 퇴원환자,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등급판정 대기자 등을 대상
1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5,840	1,140	16,980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단가 인상률 반영 (730,500원 → 783,000원)
11	긴급복지지원	46,950	3,075	50,025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비' 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별설명서 p.3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시는 주거비, 생활비 등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도시 기준의 중앙정부 최저생계비로는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재산기준 :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소득 1.3억원), 고재산 (일반재산 12억) 기준초과시 선정 제외

<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2% 이하	33~40%이하	41~48%이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33~40%이하	41~48%이하	48%이하 비수급빈곤층
지원내용	생계급여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족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동시 총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절차와 방법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게 됨. 그러나,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정기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음.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한 비용이며,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 환산 재산을 더해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함.

〈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기준 비교

2026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생계,의료,주거, 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55백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 '26년 3월 현재 해당사업의 집행액은 66억 8천만원(집행률 30.5%)이며, 집행기관은 기정예산 218억원에서 55억 5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5%)을 증액한 27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사업의 추정 편성사유를 '26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신청자의 지속 증가에 따른 지원증가로 밝히고 있으나, 본 예산의 약 25%에 달하는 증액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세입·세출의 변동 또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외적 재정수단인바,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증액이 단순한 수요 증가인지, 또는 당초 예산 편성의 미흡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7,404,976	(x-) 21,848,376	(x-) 5,556,600
사무관리비	(x-) 8,000	(x-) 8,00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0,000	(x-) 30,00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x-) 27,300,000	(x-) 21,743,400	(x-) 5,556,6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x-) 66,976	(x-) 66,976	(x-) 0

1) 추경 편성 사유 검토

① '26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함. '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5년 239만 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됨.

〈표〉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역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함.

〈표〉 202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6년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급여의 최대·최소지원액과 실제급여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급여수준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형 기초보장의 생계급여는 최대지원액에서 소득평가액 환산액을 뺀 금액(소득대비 차등지급)으로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며, 최소지원액은 서울형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임.
 - 해산급여는 '26년 기준 1인당 700,000원, 장제급여는 1구당 800,000원으로 정액지급됨.

〈표〉 2025년, 2026년 서울형 기초보장 최대·최소 지원액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최대지원액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지원액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6년	최대지원액	410,280	671,890	857,450	1,039,160	1,209,080	1,368,960
	최소지원액	136,760	223,970	285,820	346,390	403,030	456,320

- 이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의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7.20%(1인가구 기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1인가구는 월 9,180원~ 월 27,550원, 6인가구는 월 26,190원~월 78,590원의 범위에서 인상 효과가 발생함.
- 기존 중위소득 인상은 제도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수반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단순한 수급자 증가뿐만 아니라 급여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증가분이 전체 증액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확인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가구별 소득평가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은 총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신청자 지속 증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신청을 받은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가구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규모의 변동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집행기관은 '25년 신청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¹⁾에 따라 동주민센터 방문이 증가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발굴이 확대된 점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점점을 확대함으로써 잠재적 복지수요가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월별 대상가구 및 가구원 수는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5년 7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행정점점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음.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재구성)

	지급대상	신청기간	오프라인 지급방법	찾아가는 신청	서울시 신청현황
1차	전국민	25.7.21~ 25.9.12	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총 신청자수 8,988,270 (지류 : 4,606명, 선불카드 1,465,317명)
2차	소득 90%	25.9.22~ 25.10.31.			총신청자수 7,255,580 (지류 : 4,612명, 선불카드 1,269,691명)

〈표〉 '25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가구/가구원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수	4,350	4,405	4,482	4,457	4,276	4,076	4,176	4,376	4,546	4,695	4,925	5,021
가구원 수	5,863	5,924	6,043	6,024	5,813	5,504	5,681	5,943	6,170	6,377	6,694	6,840

〈표〉 최근 3개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규모 추이

구분	가구 수 (전년대비 증가율)	가구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본예산	집행액
'23년 12월	4,790가구 (2.0%)	6,334명 (4.5%)	17,732백만원	18,201백만원
'24년 12월	4,293가구 (△0.1%)	5,798명 (△8.4%)	17,815백만원	16,395백만원
'25년 12월	5,021가구 (16.9%)	6,840명 (17.9%)	18,152백만원	21,280백만원

- 다만, 최근 3년간 통합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규모를 보면, '25년 신규 통합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11,753가구(23,548명) 증가한 반면, 기존 수급자와 신규 선정자를 합친 총 수급 가구는 5,021가구로 전년 대비 697가구(1,008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규 선정 가구수는 전년 대비 358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3년-'24년도의 357가구 증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최근 3년 기초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신청자 및 신규선정자
추이

연 도	인원	통합신청	신규 선정			서울형기초 현원 (연도말기준)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타복지 연계	
2023년	가 구	66,294	59,178	2,055	5,012	4,837
	인 원 (명)	110,722	83,711	2,809	7,562	6,332
2024년	가 구	62,741	60,229	2,412	5,431	4,324
	인 원 (명)	105,089	82,644	3,333	7,673	5,832
2025년	가 구	74,494	55,329	2,770	6,733	5,021
	인 원 (명)	128,637	76,875	3,789	9,875	6,840
2026년 (3월말 기준)	가 구	23,791	11,603	485	1,665	5,322
	인 원(명)	42,701	15,857	650	2,241	7,227

- 이에 비추어 볼 때, 신청자 증가가 곧바로 수급자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쿠폰 발행과 연계된 별도 상담·선정 실적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신청 증가의 원인을 소비쿠폰 발행에 한정하여 해석하기보다는, 고물가 등 경제여건 변화, 복지제도 인지도 제고, 동주민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신청자 증가 요인을 특정 정책(소비쿠폰 발행)에 한정하기보다는, 경기여건 변화, 복지 접근성 확대, 행정접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증가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 이는 일시적 추경이 아닌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성격의 재정수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2)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은 3월 현재 집행액이 6,679,136천원(집행률 30.5%)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본 예산의 25%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요 추계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산식과, 현재 제출한 추계산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산출 내역

	사회보장적수혜 금 편성 현황	추계액	추계산식 상세
26년 본예산	21,743,400 천원 (생계급여+해 산·장제급여)	생계급여 21,630,700천원	<u>4,600가구</u> (‘25년 방침서상 목표가구수) × <u>‘391,860천원</u> (‘25년 월 평균 지급액)
		해산·장제급여 112,700천원	
26년 추경예산	27,300,000 천원 (생계급여+해 산·장제급여)	생계급여 27,240,000천원	<u>5,322가구</u> (‘25년말 기준 가구수 5,021가구 × 최근 3년 증가율 6%) × <u>426,540원</u> (‘25년 가구당 월 평균 지원액 391,860천원 *×최근 3년 증가율 8.85%)
		해산·장제급여 60,000천원	<u>80명</u> (최근 3년 평균 지원인원) × <u>750,000원</u> (‘26년 월 평균 지원액)

- '26년 본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지원가구수와 전년도 월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3년도 4,837가구, '24년도 4,324가구, 25년도 5,021가구로 나타나는 등 평균 3년간으로 대상자를 추계하기에는 일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 특히 '25년 6월 이후에는 월별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초 예산은 사업의 수요 변동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제 수요보다 다소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실적 및 최근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잦은 변경과 집행잔액의 발생 등 예산 추계가 면밀하지 않은 측면이 다소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 현황

(2026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3	(x-) 17,732,249	(x-) 0	(x-) 900,000	(x-) 18,632,249	(x-) 18,201,122	(x-) 0	(x-) 431,127
2024	(x-) 17,815,870	(x-) 0	(x-) 0	(x-) 17,815,870	(x-) 16,395,932	(x-) 0	(x-) 1,419,938
2025	(x-) 18,151,316	(x-) 0	(x-) 3,300,000	(x-) 21,451,316	(x-) 21,279,572	(x-) 0	(x-) 171,744
2026	(x-) 21,848,376	(x-) 0	(x-) 0	(x-) 21,848,376	(x-) 6,679,136	(x-) 0	(x-) 15,169,240

- '23년도 본 사업은 12월, 9억원의 예산 변경을 실시해 부족예산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예산 편성 시 4,600가구로 대상을 추계해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인원이 늘어난 것(11월 기준 5,209가구) 에 기인하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인원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들고 있음.
- '24년도 본 사업은 1,419,938천원의 집행잔액(집행률 92.1%)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당시, 수급자 자격, 급여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24.11.~25.5) 추진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완화로 다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전환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예상 소요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감소한 것이 주요사유임.

- '25년도의 경우 11월 30억, 12월 3억의 예산변경을 실시해 부족 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남. 집행기관에서는 당시 예산변경 사유로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확인조사 지연에 따라 실제 지원가구가 예상가구보다 많았다는 점, 수급 신청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수급가구가 17.5% 증가한 점을 들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5년 10월 기준 98.1%의 집행을 보였으며, 10월 기준 대상가구 수(4,659가구)를 적용해 11월, 12월 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3년과 '25년은 연말에 예산 부족현상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24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본예산 편성시 반복적으로 대상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나타남. 이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은 '25년 월별 대상자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한 바,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따라서 금번 추경은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구조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본 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상자 증가 추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기준 변동 등 주요 증가 요인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에는 대상자 증가 추이, 가구유형별 급여 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 변동 영향, 경기 및 물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수요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본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의견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 및 전년도 예산 부족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예측가능한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수요추계 및 재정운용을 통해 본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나.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사업별설명서 p. 49>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장애인 버스요금 사업 개요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범위 : 서울버스(시내·마을), 수도권(인천·경기) 버스 환승요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
- 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 방법 :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26년도 예산 : 399억원 (시비 100%)

-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분인 56억 4,483만원의 증액분을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

<표> 장애인 버스요금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5,595,574	(x-) 39,950,740	(x-) 5,644,834
사무관리비	(x-) 93,720	(x-) 93,720	(x-) 0
공공운영비	(x-) 113,020	(x-) 113,02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x-) 45,388,834	(x-) 39,744,000	(x-) 5,644,834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재정수단인 바, 본 사업의 증액 사유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본 사업은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증액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인지, 또는 구조적인 예산 과소편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1) 연속적인 추경편성

- '25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은 38만 5천명(서울시 인구의 4%)로, '25년 말 기준 총 23만 9,174명이 버스요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버스요금 누계지원 현황은 181만명, 420억 원으로 나타남.

〈표〉 '25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현황(누계)

(단위 : 천명, 백만원)

지 관 내 역	합계	2025년												
		24년 지연 지급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 구 면 적	1,810	146	135	131	132	137	138	140	140	140	140	143	144	144
인 구 면 적	42,011	3,644	3,209	2,915	2,977	3,301	3,356	3,384	3,352	3,502	3,435	3,565	3,410	1,961
평 인 구 면 적	23천원	25천 원	24천 원	22천 원	23천 원	24천 원	24천 원	24천 원	24천 원	25천 원	24천 원	25천 원	24천 원	14천 원

- 본 사업은 2024년 이후 매년 본예산 대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보전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표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25년 초에 '24년 지연지급분 14만 6천 명, 36억 4천4백만원이 '26년도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대상자의 교통비 부담을 일정 기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지급의 적시성이 정책 효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지연지급의 반복은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편성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2024	24,280,185	9,421,000	33,201,185
2025	38,604,540	3,644,000	42,248,540

2) 월별 신청자 추세

- 25년 본 사업의 월별 신청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매월 신청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24년 장애인 버스요금 누계 신청자 현황

(단위:명)

장애 정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15,170	217,401	219,560	221,895	223,787	225,981	228,814	230,946	233,341	235,206	237,067	239,174
심한 장애인	76,877	77,594	78,328	79,041	79,635	80,294	81,131	81,779	82,578	83,149	83,701	84,342
심하지 않은 장애인	138,293	139,807	141,232	142,854	144,152	145,687	147,683	149,167	150,763	152,057	153,366	154,832

- 월별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일시적 요인보다는 제도 정착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2023년 8월부터 사업 실시 이후 이용자 수, 월별 이용실적, 평균 지원액 등 관련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보다 적절한 규모의 본예산 편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전년도 미지급액을 연초에 일괄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인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26년도 예산은 전년도 편성액 대비 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바, 반복적인 과소편성과 사후 보정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획적 재정운용 및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은 최근 이용자 증가 및 지원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금번 증액은 일시적 수요 증가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 재정관리 및 수요예측 체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 돌봄SOS 사업운영<사업별설명서 p.76>

1) 사업개요 및 예산안 현황

- 돌봄SOS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치구에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11,900천원을 증액하여 총 38,000,285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증감의 사유는 통합돌봄대상자 중 긴급지원 등이 필요한 대상자 (퇴원환자,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등급판정 대기자 등) 에게 일시재가 서비스에 한 해 연 60만원 추가 지원 시범 추진하고자 함.

<표> 돌봄SOS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8,000,285	(x-) 36,088,385	(x-) 1,911,900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4,000	(x-) 4,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7,926,285	(x-) 36,014,385	(x-) 1,911,9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x-) 40,000	(x-) 40,000	(x-) 0

- 다만, 해당 추가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 예상 이용건수, 1인당 평균 이용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추진경위 및 예산안 편성목적

- 돌봄SOS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동행센터 사업과는 달리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특히,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등 소득 기준과 요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용료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또한 '26년 에는 서비스별 이용한도 폐지 및 연간 이용금액 상향 (160만원→180만원)에 따라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전체 이용금액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서비스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의 5대 서비스가 있음. 이번 추경에는 이중 일시재가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을 요청함.
- 이에 본 사업의 증액이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해당하는지와 통합돌봄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돌봄SOS 5대 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간단 수리·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식사조리 및 가정배달
1시간 24,580원	1일 71,970원	60분 16,300원	60분 16,300	1식 10,100원

- '21년~25년 기준 돌봄SOS사업 중 일시재가서비스는 식사배달 40% 다음으로 이용량이 많아 23%를 차지함.

〈돌봄SOS 5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21년~‘25년 전체)〉



- ‘25년 기준 이용자 특성을 보면 돌봄SOS를 신청한 대상자 중 소득별 기준으로는 저소득이 97.5%,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77.2%,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8.6%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돌봄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소득·가구원수·연령별 돌봄SOS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소득별		가구원수별		연령별		
		저소득	일반가구	1인가구	2인 이상	65세 이상	50세 ~ 64세	50세 미만
합계	163,270	159,746	3,524	125,978	37,292	128,344	30,482	4,444
비율	100%	97.5%	2.5%	77.2	22.8	78.6%	18.7%	2.7%
2021	33,156	31,830	1,326	22,911	10,245	25,530	6,565	1,061
2022	34,169	33,315	854	25,046	9,123	26,481	6,697	991
2023	33,985	33,611	374	27,967	6,018	26,440	6,763	782
2024	32,232	31,742	490	26,037	6,195	25,800	5,734	698
2025	29,728	29,248	480	24,017	5,711	24,093	4,723.0	912.0

- 일시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등), 간병, 일상생활지원(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이동지원 활동 등을 돕는 사업임.

〈 일시재가서비스 운영기준 〉

제공시간	세부운영사항	가산/지원
24시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수가(1회 16,940원; 30분 기준) · 이용 시간대별 해당 수가 적용 · 1일 이용한도금액 228,676원 ·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내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급여 수가를 근거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할증, · 고난도업무(와상환자, 장애인등)수가 · 교통비, · no-show

3) 종합의견

〈 '25년 서비스별 이용 건수 및 총이용량 · 이용액〉

구분	합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용건수(건)	52,457	12,746	83	12,636	10,441	16,551
비율(%)	100.0	24.3	0.2	24.1	19.9	31.6
총 이용량	-	536,516시간	908일	55,651시간	31,522시간	455,705식
총 이용액 (천원)	18,008,426	10,478,289	64,447	1,175,423	1,768,081	4,522,185
비율(%)	100.0	58.2	0.4	6.5	9.8	25.1

- 해당 부서에서는 통합돌봄시행에 따른 일시재가서비스의 요청 증가에 따라 '25년 퇴원환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일시재가 총 이용액 7,647,600천원(12,746명×일시재가 중 퇴원환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평균 이용금액 60만원)의 50%인 3,823,800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음.
-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을 긴급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여 요청액의 50%인 1,911,900천원으로 확정하여 제출함.

- 금번 증액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부서 추계 대비 축소된 규모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을 일정 부분 통제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조정으로 이해됨.
- 다만, 시범적 성격 또는 정책 확대 과정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대상 규모 설정, 단계적 확대 계획, 성과평가 기준 등 사업 운영의 체계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본 사업이 기존의 긴급·일시적 지원이라는 돌봄SOS사업의 취지와 달리, 향후 상시적 급여 성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돌봄SOS사업 특히 일시재가서비스는 사업의 내용을 볼 때 대상자별로 단가, 시간, 지원 내역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추계를 하기 어려운 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및 퇴원환자 등 긴급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금번 증액은 사업부서 요구 대비 50%로 축소된 수준으로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사업별설명서 p.61>

1) 사업개요 및 예산안 현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들에게 시정 정책 참여 기회 및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48,125천원이 추가 편성되어 96,250천원으로 증액 편성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돌봄 보조 인력지원 편성(안)>

사업명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위탁금	(x48,125천원) 96,250천원	(x-원) 0원	(x48,125천원) 96,250천원
산출내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청년인턴 운영 : 2,406천원(인/월) × 4명 × 8개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청년인턴 운영 : 2,406천원(인/월) × 1명 × 8개월		= 77,000천원 = 19,250천원

2) 추진경위 및 예산안 편성목적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신고에 대한 접수 조사와 사례판정, 피해자 보호, 학대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피해 어르신들의 일시보호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서울시에는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운영 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북)오병이어 복지재단	(사)굿위드어스	(사)참누리 (북부노인전문기관)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동부	
개소일	2004.12.23.	2011. 7.1.	2018. 12.19	2021.10.12	2017. 11.24
소재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본관 5층)	강동구 (올림픽로 703 3층)	도봉구
운영 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 직원7, 교육담당 1)	7명 (기관장1,상담원 2, 요양보호사4) ※북부 검직(2) (기관장, 상담원)
관할 구역	강남지역 (7개 자치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관악,서초,강남)	강북지역 (5개 자치구)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노원)	강서지역 (7개 자치구) (종로,중,은평,서대문, 마포,양천,강서)	강동지역 (6개 자치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송파,강동)	서울시 전지역
예산 ('25)	606,070천원	628,270천원	548,464천원	571,696천원	284,091천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기능〉

<p>1. 신고접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119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사례 의뢰 ○ 본인, 가족, 신고의무자 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 ○ 피해자, 학대행위자, 가족 등에 학대사실여부, 생활환경 등 조사 <p>2. 사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 및 학대사례 판정 <p>3. 피해자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의료, 복지,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제공 <p>4. 학대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청 합동점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접수 현황〉

구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신고합계(건)	1,470	1,618	1,963	2,081	2,313	2,436	3,385	3,460	4,162	1,121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노인학대(의심) 사례 및 가해자와 분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서울시의 노인인구와 민원 증가 대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학대 피해노인쉼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의 과중 및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원 충원을 요청함.
 -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8%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정원 5명)만 운영 중임. 다만 시립요양시설 등에서 시설 정원내로 학대피해노인의 단기입소가 가능함.
 -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도 각각 2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음.

3) 종합의견

- 국비50%:시비50% 비율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인턴 5명을 선발해 '26.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노인전용쉼터에 각 1명씩 배치 지원하는 사업임.
- 국비 매칭사업이며 인력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8개월치 인건비가 편성되었음에도, 5월부터 채용절차는 진행하게

될 경우 채용부터 임용까지 통상 3~4주 정도의 기간이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업기간의 축소로 인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적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비 내시로 확정된 사업은 추경에 대한 보고가 사후승인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별설명서 p.62>

1) 사업개요 및 예산안 현황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임.
- '26년 예산이 15,810,000천원 편성되었으나, 생계비 인상을 7.2%를 반영하여 1,140,000천원 추경 요청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6,980,000	(x-) 15,840,000	(x-) 1,140,000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x-) 16,950,000	(x-) 15,810,000	(x-) 1,140,000

2) 추진경위 및 예산안 편성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까지 반영하므로 지원, 선정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시급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국가형 긴급복지의 소득, 재산, 금융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타 복지제도와 지원 기준 비교〉

2026년 (2026.1.1. 현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50%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55백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31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 : 기준중위소득 100%
(서울형) 긴급복지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9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1,0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공제 -

-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및 생계비 지원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6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에 따라 고시됨.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단위 : 원)

기 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에 지원이 됨. 국가형 긴급복지사업과 비교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위기 사유 및 지원금액 등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6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5년 대비 생계지원비가 7.2% 증액되었으며,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은 '25년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됨.

〈'26년 기준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1회 (상이한 위기)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상이한 상병)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

- '25년 기준 전체 사업예산은 15,529,000천원이었으며 25,081가구에 지급하여 예산대비 집행율이 97.6%였음. 생계지원이 59.7%로 가장 많고, 의료지원이 36.6%, 주거지원이 1.8%에 해당됨.

〈'25년 기준 서울형 긴급지원 지원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25	25,081	15,529	16,715	9,268	7,374	5,537	625	274	367	69

* 기타지원에는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이 해당됨.

3) 종합의견

〈'26년 서울형 긴급지원 본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합 계	15,559,000	15,840,000
사무관리비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홍보비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홍보비 및 직원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사업안내서 제작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 동일	
사회보장적수혜금(취 약계층, 지방재원)	○ 저소득 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14,229,000,000원 = 14,229,000천원	○ 저소득 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15,810,000,000원 = 15,810,000천원
	증감사유	
	○ 생계지원(60%)에 대해 지원단가 인상율(3%) 반영 - (생계지원) 15,529,000천원 x 0.6 x 1.03 = 9,596,922천원 - (의료, 주거, 기타지원) 15,529,000천원 x 0.4 = 6,211,600천원 = 9,596,922천원 + 6,211,600천원 = 15,810,000천원	

- '26년 서울형 긴급지원 본예산 내역에 따르면 생계지원비 인상율 3%를 반영하여 편성함.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사무관리비와 의료, 주거, 기타 지원 등을 포함한 15,840,000천원의 7.2%에 해당하는 1,140,000천원이 요청되었음.
- '26년 기준 지원 내용을 보면 의료, 주거, 기타 지원 등은 25년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므로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생계지원비('25년 서울형 긴급지원 실적의 59.7%)외의 지원 내용들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3%가 추가 편성된 26년 본예산 편성 기준이 아닌, 25년 생계지원비 예산 기준으로 7.2%가 반영되어 책정되어야 함.

- 따라서 '25년 생계지원비(15,529,000천원*60%)의 7.2%에 해당하는 670,853천원 증액된 16,480.853천원이 추경예산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형 긴급복지 추경편성 수정안>

과목구분	추경 편성안	수정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서울형 긴급복지 = 1,140,000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670,853천원
	증감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단가 인상률 반영(730,500원 → 783,000원)	15,529,000천원*0.6*0.072=670,85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수정예산 (B)	증감 (A-B)
계	(x-) 16,980,000	(x-) 16,480,853	(x-) 469.147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0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x-) 16,950,000	(x-) 16,480,853	(x-) 469.147

- 이와 같은 사업설명서 상 계산 오류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실 지원액의 누계를 반영하여 추경안의 요청액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함. 26년3월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총 4,22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26년 전체 예산의 26.7%에 해당되어 매년 3월까지 누적수치에 비해 지원액이 증가된 것을 확인함.
- 통합돌봄 실시로 민원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가상승 등의 사유로 위기가구가 증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함.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연간 지원 예산안을 16,908백만원(1분기 지원실적 4,227백만원×4분기)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6년 1~3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율	총 계	1월	2월	3월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	15,810,000,000	26.7%	4,226,842,776	1,328,496,710	1,315,384,860	1,596,692,846
종로구	203,100,000	18.2%	37,032,910	5,976,920	12,365,350	18,690,640
중구	233,654,000	17.7%	41,299,930	7,799,510	8,654,500	24,845,920
용산구	588,628,000	37.2%	218,716,830	70,330,500	71,091,750	77,294,580
성동구	636,618,000	21.4%	136,044,900	33,609,770	47,554,930	54,880,200
광진구	416,083,000	25.9%	107,805,640	20,958,800	42,537,180	44,309,660
동대문구	884,697,000	25.7%	227,012,640	51,017,650	66,792,660	109,202,330
종랑구	913,770,000	25.5%	232,918,000	69,228,570	56,675,090	107,014,340
성북구	623,722,000	31.9%	199,203,570	48,339,150	63,034,670	87,829,750
강북구	629,791,000	24.9%	156,680,960	36,035,090	54,984,190	64,790,520
도봉구	570,701,000	23.6%	134,871,396	52,861,240	43,217,030	37,743,126
노원구	999,167,000	25.9%	258,460,610	76,452,260	61,998,690	120,009,660
은평구	544,593,000	20.0%	108,927,420	36,716,690	26,937,830	45,272,900
서대문구	301,054,000	21.9%	65,990,910	24,512,530	23,057,350	18,421,030
마포구	815,008,000	24.9%	203,189,970	60,436,910	75,684,090	67,068,970
양천구	940,691,000	31.2%	293,099,320	75,318,960	104,577,230	113,203,130
강서구	589,035,000	32.3%	190,366,420	67,905,380	57,035,720	65,425,320
구로구	618,284,000	37.8%	233,915,040	86,319,890	6,680,350	80,214,800
금천구	551,314,000	23.7%	130,913,790	49,441,480	45,196,500	37,925,810
영등포구	460,702,000	13.8%	63,573,900	23,343,000	21,007,000	19,223,900
동작구	842,913,000	28.8%	242,999,400	110,427,900	61,711,310	70,860,190
관악구	924,462,000	29.7%	274,561,010	76,776,540	91,991,100	105,793,370
서초구	165,309,000	15.5%	25,551,350	13,176,030	27,078,120	-
강남구	846,147,000	19.7%	166,937,070	50,405,170	50,677,590	65,854,310
송파구	846,147,000	36.1%	305,129,950	114,204,540	81,932,630	108,992,780
강동구	479,847,000	35.8%	171,639,840	66,902,230	52,912,000	51,825,610

- 긴급복지의 경우 개인의 시급성과 사회적 여건 등 복지 욕구 등에 따라 변화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사업임. 이에 다양한 변동성을 대비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지원 금액이 소득 기준과 같이 25.7.31.에 고시된 '26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매년 중위소득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위기상황 발생 시 금융재산조사 완료 전 긴급하게 선지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차후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수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인상을 상승분 등 소요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추경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사후조사 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